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4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덕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③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1]는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설치하고,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번역가 양성 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한국문학의 원어민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번역아카데미 운영 교육 과정]

과정명	정규과정 (한국문학·한국어문화 예술 콘텐츠 통합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언어권	7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운영시간	주간	야간(비대면 중심)	야간/격주(비대면 중심)
학제	2년제 (총 60주, 주당 9～15시간)	1년제 (총 24주, 주당 2시간)	1년제 (총 14주, 회당 3시간)
입학시기	가을학기(8월)	봄학기(4월)	봄학기(4월)
재학기간	’23.8.～’25.6.(16기)	’23.4.～’23.12.(16기)	’23.4.～’23.12.(14기)
개설 과목	번역실습, 한국문학 및 문화예술 소양교육 등	번역실습	번역세미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만 번역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므로, 교원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전임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해외 번역 전문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번역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학위과정에 2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학생 모집에 한계가 발생하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공신력 있는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워 구직활동 등 수료 이후 경력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 제30조[2]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을 통해 기존의 번역아카데미를 정식 학위 인정기관으로 격상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등 기존에 번역아카데미가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더라도[3], 예상되는 연간 소요 예산은 72억 4,800만원 이상으로, 이는

---

2)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3) 동일한 취지 및 개정사항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919호)의

2024년 기준 번역아카데미 예산액 38억 6,600만원에 비해 약 3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한 수준인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예상 소요 예산 비교]

항목	번역대학원대학교	번역아카데미
인건비	• 인건비 2,498백만원 - 전임교원 15인, 행정직원 12인, 총장 1인 등 총 28인 기준	• 인건비 910백만원 - 교직원(계약직 5인): 310백만원 - 인턴/업무보조원: 106백만원 - 강의사례비: 494백만원
학생 관련 경비	• 수료생 선발비, 장학금 등 2,200백만원 - 입학설명회 개최, 장학제도 확대 등 추가예산 소요	• 수료생 선발비, 장학금 등 976백만원
기타 운영비	• 관리·운영비: 1,800백만원 - 전임교원 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 자산구입비 350백만원 • 예비비 400백만원	• 관리·운영비: 1,895백만원 -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단 운영,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번역교육 학술대회 등 포함 • 자산구입비 85백만원
계	7,248백만원	3,866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개정안은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과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4]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을 둔 유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번역대학원대학의 건물을 새롭게 신설할 경우 토지매입비·건축비·운영비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517억 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된 바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게 될 경우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소재한 건물을 번역대학원대학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임.

4)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사 입법례에도 기관장 등을 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안 제13조의제2항 후단에 한국문학번역원장을 번역대학원대학의 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대학원대학 설치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국립외교원법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셋째,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부속기관에 해당하는 번역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

라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5]를 개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직접 출연하도록[6]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므로, 한국문학번역원의 경비 보조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국가재정법」 제12조[7]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이 동 규정의 출연 사유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등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출연금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암관리법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6)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따라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보조에서 출연으로 변경되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 번역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하여 정식 학위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잦은 이월 방지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보조금 방식보다 출연금 방식의 예산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 중인 번역 전문가 양성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도 통·번역대학원[8]이 설립·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기능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별도의 번역대학원대학을 신설·운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8) 현재 민간의 통·번역대학원은 4개의 전문대학원, 7개의 특수대학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 등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부속기관은 번역대학원대학에 국가가 출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 등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부속기관은 번역대학원대학에 국가가 출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3조의제3항 삭제 등).

수정주요내용

가.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할 때, “총장”을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2제3항 삭제 및 제14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안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비”를 “출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③ 정부는 번역대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삭 제>

	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보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출연 또는 보조-----.

법률 제 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비"를 "출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출연 또는 보조----------.